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14호

기존 입법예고한(중소기업청 공고 2015-8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95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도사 업무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정비 및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조정된 시행규칙의 ‘갱신등록’ 중 단서 조항 삭제(안 제20조) 및 ‘지도사 업무제한’(안 제23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내용 통보 등’ 조항 삭제(안제24조)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18호서식)

- 자격증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규제 재검토 대상 2개 추가(안 제28조)

-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류' 및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서류'에 일몰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8909, Fax : 042-472-34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의 각 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제17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류 : 2015년 7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서류 : 2015년 7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시의 제출서류 : 2015년 1월 1일

별지 18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갱신등록)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제23조(업무제한) 법 제52조제3호에서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u>”란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제24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내용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p>	<p>제20조(갱신등록)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갱신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 단서삭제 ></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확 등의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은 <u>제17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제28조(규제의 재검토) ----- ---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u> <u>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u> ----- ----- ----- -----</p> <p><u>1. 제12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u> <u>인가 신청서류 : 2015년 7월 1일</u></p> <p><u>2. 제13조에 따른 공장용지와 시설의</u> <u>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서류</u> <u>: 2015년 7월 1일</u></p> <p><u>3. 제17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시의</u> <u>제출서류 : 2015년 1월 1일</u></p>

[별지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 호

지도사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지 도 분 야:

위 사람은 년 시행 제 회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